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779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779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507395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7. 11.

판결 선고 2018. 8.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50739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부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I"을 "J"으로 각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1) 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5. 7. 1. 접수 제3142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5. 7. 10. 접수 제2432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5행 및 제6면 제7행 중 각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다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인 2015. 7. 1. 당시 서울 중구 E 외 3필지 지상 F 아파트 제114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전인 2015. 6. 24. 이미 L 및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였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직후인 2015. 7. 20. L 및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 당시 A의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시에 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설령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A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보건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A이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2015. 7. 20. L 및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6.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A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다른 채권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이 공제되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A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216,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21,148,000원으로서 A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A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216,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21,148,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A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부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I"은 "J"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이원호

판사신동호

별지

1)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9. 30. 상호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2017. 1. 14. K를 「J」으로 각 변경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상호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원고의 K를 「I」로 각 기재하였다.